##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74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신정훈·김원이·강선우

김정호・이상헌・아수잔비

김영호 · 김경만 · 안호영

송옥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우수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국내 및 국외연수로 한정되어 우수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자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업무도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무연수 기준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호 및 제2호).
- 나.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및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그 수 요에 적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생산업무에 15년"을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에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연수를 실시할"을 "연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	
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1
직종의 <u>생산업무에 15년</u> 이상	<u>생산·서비스·기술개</u>
종사한 사람	<u>발 업무에 10년</u>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2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u>10년</u> 이상 종사한 사람	<u>5년</u>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
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	원) ①
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	
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	
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	

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 여 국내 및 국외 <u>연수를 실시</u> <u>할</u>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연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

② ~ ④ (현행과 같음)